

의안 번호	241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5. 2.(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2.(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5. 19.(월)

2. 제안설명 요지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를 정비하여 근무 여건 정립을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범위 확대
(안 제3조 및 별표5)
- 경조사 휴가 정비(안 별표4)
- 법령(법률, 시행령) 제정·시행 및 기존법령 폐지 반영
(안 제16조제2항)

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제7조의7제1항 및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를 정비하여 근무 여건 정립을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
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
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
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5. 2. 1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